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08. 3. 26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2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26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

률 제8769호, 2007. 12.21 공포, 2008. 6. 21 시행) 개정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상세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산업표준화법」(법률 제8486호, 2007. 5.25. 공포, 2008. 5. 26. 시행)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어 한국산업 규격표시가 제품의 인증으로 변경되고 관련 조문도 변경됨에 따라 이에 적합토록 「산업표준화법」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세기준의 승인 절차를 정함(안 제8조의2)

## II.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769호, 2007. 12.21 공포, 2008. 6. 21 시행) 개정법률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적합토록 규칙에는 순수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에서 운용토록 상세 기준으로 이관하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급시마다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수요자 요청시마다 점검토록 현실화 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로 사업자의 편익증대 도모(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 17)

○ 행정관청에 수요자별 소비설비안전점

검표 사본을 제출(월 1회)하는 대신 점검현황총괄표를 제출토록 개선하고,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토록 하고 있는 의무조항은 폐지

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현실화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부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 동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마다에서 수요자의 요청시마다로 개선함으로써 다른 사용시설(1회/6개월)과의 형평성 유지 및 충전대기 차량 증가 등으로 공급시마다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의 범위를 정 함(안 제51조제1항)

○ 법 제27조제2항에서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완성공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변경공사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 확대 로 용기가스소비자의 권익보호(안 제56조제1항제2호나목)

○ 보상대상에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포함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의 조항 삭제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 등의 기준 개정(안 별표 3, 4, 5, 6 및 18)

o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 기준으로 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적합토록

- 규칙에는 순수기술적 사항을 제외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민간에서 운용토록 상세 기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술변화에의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가스 사고 예방에 기여

### III. 의견제출

이들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4월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전화: 02-2110-5446,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 (정 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신설〉</p> <p>3. ~ 13. (생략)</p> <p>② ~ ④(생략)</p> <p>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의2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p>	<p>제2조 (정 의)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p>2의2. “마운드형 저장탱크”라 함은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저장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뒤은 저장탱크로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허가시설에 설치되는 저장탱크를 말한다.</p> <p>3. ~ 13. (현행과 같음)</p> <p>② ~ ④(현행과 같음)</p> <p>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 -----제6조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p> <p>-----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 -----</p>



현 행	개정안
<p>2호서식의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1.~3. (생략) ② (생략)</p>	<p>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신청서등)-----제6조-----</p> <p>-----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제6조 (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신청서에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 (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p> <p>-----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①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p>	<p>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제6조-----</p>

현 행	개정안
<p>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p> <p>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p> <p>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p> <p>4.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p> <p>5.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p> <p>②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을 부칙 제3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p> <p>제9조 (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허가 등) ① 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별표 3제1호 가목의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p> <p>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p> <p>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p>	<p>-----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p> <p>1. 액화석유가스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3</p> <p>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4</p> <p>3. 액화석유가스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p> <p>4. 가스용품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6</p> <p>〈삭제〉</p> <p>②----- ----- -----별표 5 에서-----.</p> <p>제9조 (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허가 등) ①----- ----- ----- -----.</p> <p>1. 별표 3제1호 가목의 (3)(마) 및 (바)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p> <p>2. 별표 5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p> <p>②----- ----- -----</p>



현 행	개정안
<p>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u>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u>-----<u>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u>-----</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u>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u>-----<u>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u>-----</p>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3 (기술검토의 신청) <u>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9조의3 (기술검토의 신청) <u>법 제4조</u>-----</p>
<p>1. (생략)</p> <p>2. <u>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u>-----</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 <u>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u></p>	<p>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 -----</p>

현 행	개정안
<p>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액화석유가스자동차 안전점검표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는 그 사본을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1.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p> <p>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p>	<p>----- ----- ----- ----- ----- ----- ----- ----- ----- ----- ----- -----</p> <p>---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점검현황총괄표를 작성하여----- ----- -----</p> <p>1. ----- ---계도물(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의 계도물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2. ----- ----- ----- -----</p>





현 행	개정안
<p>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 표 14와 같다.</p> <p>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p> <p>⑥ (생략)</p> <p>제32조 (정기검사) ① (생략)</p> <p>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p>③ · ④(생략)</p> <p>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p> <p>⑥ (생략)</p> <p>제33조 (수시검사) ① · ③(생략)</p> <p>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p>제34조의3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p> <p>① ~ ③(생략)</p> <p>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p> <p>⑤ · ⑥(생략)</p> <p>제39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p>	<p>-----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와 -----.</p> <p>〈삭제〉</p> <p>⑥(현행과 같음)</p> <p>제32조 (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19조의 -----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와 -----.</p> <p>③ · ④(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3조 (수시검사) ① · ④(현행과 같음)</p> <p>③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와 -----.</p> <p>제34조의3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p> <p>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별표 3 및 별표4와-----.</p> <p>⑤ · ⑥(현행과 같음)</p> <p>제39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0조제2항 의-----</p>



현 행	개정안
<p>-----별표 6과 같다. &lt;단서 삭제&gt;</p>	<p>한 각인 또는 표시는 <u>별표 15와 같다</u>.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등으로 인하여 <u>별표 15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u>.</p>
<p>제4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u>법 제20조제4항의</u>----- -----<u>별표 6</u> <u>과</u>-----.</p>	<p>제4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u>법 제21조제5항의</u>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별표 11</u> 과 같다.</p>
<p>제42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 -----<u>법 제21조제4항</u> <u>의</u>----- ----- ----- -----<u>별표 6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의 시</u> <u>설·기술 및 검사기준에 따른다.</u> &lt; 단서 삭제 &gt;</p>	<p>제42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u>법 제22조제4항의</u>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u>별표 6에 의한 가스용품제조기술 기준에 의한다</u>. 다만, 시·도지사는 <u>6에 의한 표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49조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① (생략) ②----- -----<u>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u>----- ----- -----</p>	<p>제49조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u>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u></p>

현 행	개정안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 설 기 준 과 기 술 기 준 에 -----</u> -----</p> <p>제50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u>시설기준과 기술기준</u>) <u>법 제27조-----</u> -----<u>시설기준과 기술기준</u> <u>은-----</u> .</p> <p>제51조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u>법 제27조제2항에 따라</u> <u>완성검사를</u> 받아야 하는 시설의 <u>변경공사는</u>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이상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u>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p> <p>2. <u>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u> 설치하는 공사</p> <p>3. <u>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u> 공사</p> <p>4. <u>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u> 공사</p> <p>5. <u>저장능력 500킬로그램이상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u> 공사</p> <p>② . ③<u>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u></p> <p>④ -----<u>제27조-----</u></p>	<p>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u></p> <p>제50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u>시설기준 및 기술기준</u>) <u>법 제29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u>시설기준 및 기술기준</u>은 <u>별표 18과 같다.</u></p> <p>제51조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lt; <u>신 설</u> &gt;</p> <p>① . ②(생략)</p> <p>③ <u>법 제29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p>



현 행	개정안
<p>----- ----- (1)~(3) (현행과 같음) &lt; 삭제 &gt;</p> <p>② (현행과 같음) 제59조 (시설·기술 기준 등에 대한 특례)----- ----- ----- -----시설·기술 기준 등 의-----.</p> <p><u>부 칙</u></p> <p><u>제1조(시행일)</u>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08. 6. 21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적용례)</u>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p> <p><u>제3조(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u></p>	<p>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p> <p>(1)~(3) (생략)</p> <p><u>(4) 별표 17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u></p> <p>② (생략)</p> <p>제59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 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가스용품제조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소시설·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 부터 3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1호관련)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p> <p>1. 제1종보호시설</p> <p>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 놀이터·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 및 여관</p> <p>나. (생략)</p> <p>다. 극장·교회 및 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p>	<p>[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1호관련)</p> <p>----- -----.</p> <p>1. -----</p> <p>가. ----- ----- ----- ----- -----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p> <p>나. (생략)</p> <p>다. <u>예식장·장례식장 및 전시장</u> 기타 이와 -----</p>

현 행	개정안
<p>축물</p> <p>라.·마. (생 략)</p> <p>2. (생 략)</p> <p>[별표 2] 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제3조의2제2항관련)</p> <p>(내용생략)</p> <p>[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1항제1호관련)</p> <p>(내용생략)</p> <p>[별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1항제2호관련)</p> <p>(내용생략)</p> <p>[별표 5]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 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관련)</p> <p>(내용생략)</p> <p>[별표 5의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제8조제2항관련)</p> <p>(내용생략)</p> <p>[별표 6]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1항제4호관련)</p>	<p>-----</p> <p>라.·마.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2]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3조의2제2항관련)</p> <p>(별지와 같이 개정함)</p> <p>[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의3제4항 관련)</p> <p>(별지와 같이 개정함)</p> <p>[별표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의3제4항 관련)</p> <p>(별지와 같이 개정함)</p> <p>[별표 5] 액화석유가스 판매·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3호·제2항, 제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p> <p>(별지와 같이 개정함)</p> <p>〈 삭 제 〉</p> <p>※ 별표 5에 통합</p> <p>[별표 6] 가스용품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30조제4항, 제39조 및</p>





현 행	개정안
<p>(내용생략)</p> <p>[별표 7]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1항제5호관련)</p>	<p>제40조 관련)</p> <p>(별지와 같이 개정함)</p> <p>〈 삭 제 〉</p> <p>※ 별표 4에 통합</p>
<p>(내용생략)</p> <p>[별표 11]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제40조관련)</p>	<p>〈 삭 제 〉</p> <p>※ 별표 6에 통합</p>
<p>(내용생략)</p> <p>[별표 14]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기준(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및 제51조제7항관련)</p>	<p>〈 삭 제 〉</p> <p>※ 별표 3, 4, 5, 6, 18에 각각 통합</p>
<p>(내용생략)</p> <p>[별표 14의2] 정밀안전지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제34조의3제4항 관련)</p>	<p>〈 삭 제 〉</p> <p>※ 별표 3, 4에 각각 통합</p>
<p>(내용생략)</p> <p>[별표 15]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39조 관련)</p>	<p>〈 삭 제 〉</p> <p>※ 별표 6에 통합</p>
<p>(내용생략)</p> <p>[별표 17] 액화석유가스의공급방법(제45조관련)</p> <p>1. (생 략)</p> <p>2. 용기에 의한 공급기준</p> <p>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p> <p>(1)·(2) (생 략)</p> <p>(3) (1)의 안전공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가) ~ (사) (생 략)</p> <p>〈 신 설 〉</p>	<p>[별표 17] 액화석유가스의공급방법(제45조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용기에 의한 공급기준</p> <p>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p> <p>(1)·(2) (현행과 같음)</p> <p>(3) ----- -----.</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제56조에 따른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정안
<p>(4) (생 략)</p> <p>(5) (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u>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6) (생 략)</p> <p>나. 다. (생 략)</p> <p>라. 계약의 해지 및 공급설비의 철거</p> <p>(1) 용기가스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때에는 가스공급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u>2일 이내</u>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하되,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한다.</p> <p>(2) (생 략)</p> <p>(3) 용기가스소비자는 가목(2)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자가 무단으로 가스공급의 중단, 사전협의없는 요금의 인상, 안전점검 미실시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스공급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u>2일 이내</u>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하</p>	<p>(4) (현행과 같음)</p> <p>(5) ----- ----- -----<u>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6) (현행과 같음)</p> <p>나. 다. (현행과 같음)</p> <p>라. 계약의 해지 및 공급설비의 철거</p> <p>(1)----- ----- -----<u>3일 이내</u>----- ----- -----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 ----- ----- -----<u>3일 이내</u>----- -----</p>



현 행	개정안
<p>고 계약을 해지한 후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p> <p>(4)~(6) (생략)</p> <p><u>[별표 18]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50조관련)</u></p> <p>(내용생략)</p> <p><u>[별표 19] 안전교육실시방법(제54조제1항관련)</u></p> <p>1. 교육계획의 수립</p> <p>공사는 매년 12월말일까지 전문교육·특별교육 및 양성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2. 교육신청</p> <p>가. 전문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이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나. (생략)</p> <p>3. 교육일시의 통보</p> <p>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p>	<p>-----</p> <p>-----.</p> <p>(4)~(6) (현행과 같음)</p> <p><u>[별표 1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50조 및 제51조제7항 관련)</u></p> <p>(별지와 같이 개정함)</p> <p><u>[별표 19] 안전교육실시방법(제54조제1항관련)</u></p> <p>1. 교육계획의 수립</p> <p>한국가스안전공사----- 11월말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p> <p>-----.</p> <p>2. 교육신청</p> <p>가. 전문교육 -----</p> <p>-----</p> <p>-----</p> <p>-----</p> <p>-----</p> <p>-----.</p> <p>나. (현행과 같음)</p> <p>3. 교육일시 통보</p> <p>-----</p> <p>-----</p> <p>-----</p> <p>-----.</p>

현 행	개정안																								
<p>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과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대상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기간 등</th> </tr> </thead> <tbody> <tr> <td>가. 전문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내용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내용생략)</td> </tr> <tr> <td>나. 특별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내용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내용생략)</td> </tr> <tr> <td>다. 양성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내용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내용생략)</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내용생략)	(내용생략)	나. 특별교육	(내용생략)	(내용생략)	다. 양성교육	(내용생략)	(내용생략)	<p>4. ----- 시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과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대상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시기</th> </tr> </thead> <tbody> <tr> <td>가. 전문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나. 특별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다. 양성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가. 전문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특별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양성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내용생략)	(내용생략)																							
나. 특별교육	(내용생략)	(내용생략)																							
다. 양성교육	(내용생략)	(내용생략)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가. 전문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특별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양성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p>비 고</p> <p>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공사가 정한다.</p> <p>2. ~ 12. (생략)</p> <p>[별표 20의2] <u>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및소비자보 장책임보험의보험금액(제56조제3항관련)</u></p> <p>1·2 (생략)</p> <p>3. 보험료의 할인·할증기준</p> <p>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할증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신설〉</p> <p>나. (생략)</p> <p>다. 가스공급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소홀히하여 용기가스소 비자의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목의 할증율에 다음 표의 등급별 할증 율을 더하여 적용한다.</p>	<p>비 고</p> <p>1. ----- 그 밖의 교육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 정한다.</p> <p>2. ~ 12. (현행과 같음)</p> <p>[별표 20의2] <u>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및소비자보 장책임보험의보험금액(제56조제3항관련)</u></p> <p>1·2 (현행과 같음)</p> <p>3. 보험료의 할인·할증기준</p> <p>가.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들의 안전관 리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 안전관리 우수업 체로 선정되어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 자들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 ----- ----- -----.</p>																								



현 행			개정안		
등급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사항	할증률	등급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사항	할증률
A	가. 호스를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나. 호스를 호스밴드로 단단히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다. 연소기의 배기통재료가 내식성 및 불연성이 아닌 경우 <u>&lt;신설&gt;</u>	20%	A	가. ----- 나. ----- ----- 다. ----- ----- <u>라. 권장사용기기의 경과된 가스용품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u>	-
B	가.~다.(생략)	42%	B	가.~다.(현행과 같음)	-
C	가.~마.(생략)	70%	C	가.~마.(현행과 같음)	-
D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22%	D	가. <u>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u> 나. <u>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u>	-
E	가.·나.(생략)	200%	E	가.·나(현행과 같음)	-

비고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사항은 이러한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가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라.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종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라. -----  
-----  
----- 적용한다. 다만, 가목(3)의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는 A등급을 우선 적용한다.